

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



2022년 1월 25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88호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별표2 제3호 중 ‘10만원’ 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을 삽입한다

비고

별표2 비고 중 나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
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2 비고 중 다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2 비고 중 라목은 현행 다목과 같이 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2 비고 중 마목은 현행 라목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미 래 기 획 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미 래 기 획 부 장 박 인	장 희
	직 위 성 명	안 전 감 사 팀 장 이 영	장 남
	담당자 성명 (전 화)	김 형 태	태

신·구 조문대비표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현 행	개 정 안
<p>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u>10만원</u>으로 한다.</p>	<p>3. ----- ----- -----. ----- ----- ----- ----- ----- ----- ----- ----- ----- ----- ----- ----- ----- ----- ----- ----- <u>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u>---.</p>
<p>비고</p> <p>가. (생 략)</p> <p>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p>	<p>비고</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 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u></p>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
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
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
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마. (신 설)

다. 제3호

----- 경우에는 -----

-----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
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
되, -----.

라. (현행 다목과 같음)

마. (현행 라목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 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